

광주고등법원 2024. 11. 21 선고 2023나25840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광주고등법원 2024. 11. 21 선고 2023나25840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9. 21 선고 2021가합1083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계현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동아, 이가영

변론 종결 2024. 9. 26.

판결 선고 2024. 11. 21.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9. 21. 선고 2021가합10839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주위적 청구 중 채권자대위에 기한 사업승계신고절차 이행 청구 부분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나. 원고들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와 주식회사 D 사이에 2017. 2. 25. 체결한 별지 기재 사업 승계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영업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사업에 관하여 피승계인 피고, 승계인을 소외 주식회사 D으로 하는 사업승계신고절차를 이행하라.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사업에 관하여 피승계인 피고, 승계인을 위 소외 주식회사 D으로 하는 사업승계신고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와 주식회사 D 사이에 2017. 2. 25. 체결한 별지 기재 사업 승계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영업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와 주식회사 D 사이에 2017. 2. 25. 체결한 별지 기재 사업 승계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영업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사업에 관하여 피승계인 피고, 승계인을 소외 주식회사 D으로 하는 사업승계신고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1행부터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피고와 D 사이의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양도양수

1) D은 2017. 2. 25.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면허를 양도(이하 '이 사건 면허양도'라 한다)하였다. D과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D은 운항 항로인 F(기항지포함)항로를 피고에게 일체 사업승계한다.

○ 피고는 현재와 동일하게 선박운항을 하고 여객서비스개선과 안전운항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선박운항에 필요한 선원은 현 직원과 급여 및 제반 수리사항의 발생비용은 D과 피고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기항지의 대리점 계약은 D이 체결한 계약을 유지하고 수수료 및 제반 사항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피고는 재계약을 할 수 있다.

○ 선박운항에 필요한 부대시설 사용에 대해 D과 피고가 상호 합의하에 사용하며, 계약 성립과 동시에 합의하는 것으로 한다.

○ 양도금액은 피고가 D에게 대여하여준 대여금으로 완료정산하고, 양도시기는 2017. 3. 1.로 한다.

』

○ 제1심판결 제6쪽 4쪽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음에 "(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D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통해 피고에게 이 사건 해상여객운송사업 일체를 양도하였고 당시 D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는바,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은 원고들을 비롯한 D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D으로의 사업승계신고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선택적으로, D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은 피고가 L, D의 사내이사 M 등의 D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무자력인 D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무효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D으로의 사업승계신고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예비적 청구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은 위와 같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들은 D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 중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관한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4의 가.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주위적 청구 중 채권자대위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1) 권리의 행사 여부는 그 권리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데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려면 그러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보전의 필요성은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의 내용,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 채무자의 자력 유무,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권리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다50014 판결 등 참조).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가 부적법하므로 법원으로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517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제1항에서 인용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 및 거시증거, 을 제4, 18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게 D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D의 피고에 대한 원상회복청구(별지 사업에 관한 사업승계신고절차 이행청구)를 대위하여 행사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위적 청구 중 위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설령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D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가) 원고들이 이 부분 청구로 보전하려는 권리는 D에 대한 금전채권(이 사건 차용금채권에 대한 상호속용 양수인의 책임)이고, 대위 행사하려는 D의 권리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무효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해상여객운송사업에 관한 승계신고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채권으로서, 위 각 채권의 내용이나 특성에 비추어 두 채권 사이에 그 자체로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금전채권자인 원고들은 채무자인 D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서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이 원칙이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D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해상여객운송사업이 D 명의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문언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양도 대상에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물적 재산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고, 따라서 이 사건 해상여객운송사업에 관하여 승계신고절차를 통해 D 앞으로 명의가 되돌려진다고 하여 원고들이 금전채권 만족을 위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만한 재산이 회복된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바,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D의 원고들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결국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사업승계신고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인 D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인데, 금전채권자인 원고들이 D의 위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여지가 크다고 보인다.

다. 예비적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1) 확인의 소에 있어서 반드시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만이 확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러한 소가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해서는 그 권리관계에 관해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권리관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초래되고 있고, 다른 일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법률관계를 확정시키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관계에 대한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6131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1다201320 판결 등 참조).

2)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D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다.

3) 그런데 앞서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원고들이 이 부분 청구로 보전하려는 D에 대한 금전채권과 D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무효확인 청구권은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인 D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여지가 크며, 반드시 원고들의 채권 만족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도 없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4) 그렇다면 원고들이 D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들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에 관한 소는 확인의 이익도 없어 부적법하다.

4. 본안에 관한 판단(주위적 청구 중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제1항에서 인용한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들은 D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금채권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원고들이 위 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이후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 이미 이 사건 차용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원고들의 D에 대한 채권은 D이 2016. 5. 26. E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면허를 양수하고 상호를 속용함에 따라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D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대상 여부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권은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사해행위를 취소함으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취소를 구하는 대상이 독립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 민사집행법 소정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5734 판결 참조). 여러 개의 부동산, 유체동산,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하여 일괄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98조 제1항, 제2항, 제197조 제1항, 제251조 제1항 참조), 영업재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강제집행이 될 경우에는 영업권도 일체로서 환가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의 영업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킨 경우, 그 영업양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8416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제1항에서 인용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 및 거시증거, 을 제4, 18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당시 이 사건 사업면허 이외에 다른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물적 재산이 함께 양도되었다거나 영업의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피고에게 이전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피고가 2017. 2. 25. D으로부터 F(기항지포함)항로 사업일체를 승계하고 면허를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D이 사용하던 매표소 등 시설물,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동일한 판매대행업체를 통해 표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나) 그러나 기존에 D이 받은 2016. 7. 13.자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에는 선박명으로 'J'와 'H'가 모두 기재되어 있는 반면, 피고가 2017. 5. 12. 받은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에는 선박명으로 'H'만이

기재되어 있고, 달리 피고가 D의 선박 또는 용선계약을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다) 원고들이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으로 피고에게 승계된 영업재산으로 주장하는 ○ 선착장 매표소, P선착장 매표소, Q 선착장 대기소 등 시설물은 그 소유자가 각 여수시와 기획재정부이고, 위 시설물은 해당 항로에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보유한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공공시설물이어서 피고의 위 각 시설물 사용권이 사해행위의 취소 대상이 되는 강제집행이 가능한 영업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원고들은, 피고가 D이 사용하던 홈페이지를 승계하였다고도 주장하나, D과 피고의 홈페이지는 그 상호와 디자인, 구성 등에 있어서 서로 다르고, 달리 피고가 D의 홈페이지를 그대로 승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D과 동일한 전화번호를 사용한다거나 동일한 판매대행업체(R)를 통해 승선표를 판매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강제집행이 가능한 영업재산을 승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D의 인적조직이 피고에게 그대로 승계 내지 이전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D의 사내이사였던 L과 D에 투입되었던 E 임직원들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D 임직원들 중 피고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들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에도 "선박운항에 필요한 선원은 현 직원과 급여 및 제반 수리사항의 발생비용은 D과 피고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인적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한다는 내용은 찾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청구 중 채권자대위에 기한 청구 부분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의영

판사김정민

판사남요섭

별지